

제285회 임시회
환경수자원위원회

서울특별시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권수정의원 대표발의)

제 안 설 명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권 수 정
(정의당, 기획경제위원회)

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

정의당 비례대표 권수정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‘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제안 배경 및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
미세먼지는 국가 재난 수준의 재해로 서울시민의 건강한 삶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. 특히 어린이, 임산부,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은 잠깐의 미세먼지 노출만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합니다.

현행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 및 제23조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해야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함께 어린이,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

미세먼지 피해예방을 위한 1차적 수단으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고 있지만 이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비용적인 부담이 뒤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.

이에 본 조례개정안은 미세먼지 노출에 치명적인 취약 계층과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낮고 마스크 구입에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저소득층에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서울시민 모두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.

아무쪼록 이 법안을 심의함에 있어 그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